

육아정책 소식

유치원 정보공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원비현황 최초 공개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9월 2일 보도자료에서 유치원 정보공시 전용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에서 8월 정기공시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원비현황, 회계 결산서 등 정시공시 항목 2종과 유치원규칙,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등 수시공시 2종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시에서는 유치원 원비 현황 표시방법과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세부내역 공시 확대 등 일부 항목을 개선하였고, 개별유치원 정보를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치원비에 대한 국가부담금과 학부모 실질 부담금을 구분 없이 함께 공시하던 것을 '학부모 부담금'과 '국가 및 기타 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원비에서 실제 학부모 부담금의 규모를 명확하게 제시하게 된 것을 주요 개선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에 대한 유치원별 운영 프로그램 수, 일일 운영시간(단위: 분/일), 주당 운영횟수(단위: 회/주), 프로그램별 단가(단위: 원/월), 참여 원아 수(단위: 명/일), 원아1인당 특성화활동비(월 최빈값, 단위: 원/월) 등으로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였다.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2068호, 2013. 8. 13. 공포, 2013. 8. 13.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폐쇄·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8월 29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영유아 피해의 심각성 여부로 구분하여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바로 시설 폐쇄를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1년, 2차 위반 시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린다. 비교적 경미한 아동학대도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운영정지 6개월에 처하며 3차 위반 시 시설폐쇄가 가능하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 평가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는 9. 6.(금)부터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세부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1. 8. 4. 「영유아보육법」 개정시 제30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도록 한 바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인증/미인증 여부와 우수어린이집만이 공개되었으나, 개선된 바에 따르면 상세정보가 추가되었다. 세부 공개내용은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총점 및 영역별 점수, 종합 평가서, 지역별·어린이집 유형별 평균 점수 등이다.

상기 내용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평가인증 알리미' 및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공개되며 올 해 11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